

##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신생아 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입주자 모집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신생아 가구 정의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유형을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7조의4)
- 나. 입주자 모집 시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입주 순위를 조정하여 우선 지원하고자 함 (안 제7조의5)
- 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입주자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 재계약 허용하고자 함(안 제13조)
- 라.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중 입주 중 혼인한 입주자의 재계약 관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 마.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의 경우 기존 입주자격에 맞추어 4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 바. 신생아 가구 1순위 자격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격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제5호”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않는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혼부부”를 “신혼·신생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요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한부모가족”을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5. 신생아 가구

제7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배점”을 “별표3 각 항목의 배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 신생아 가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 제1순위가 아닌 신혼·신생아 입주대상자(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순위는 신혼·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4. 제4순위는 제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 한다.

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산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7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순위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7조의5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순위는 제1순위”를 “제3순위는 제1, 2순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신생아 가구(다만, 제3순위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자에 한한다)

③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의 입주자격 검증은 제7조의4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의 제목“(신혼부부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를“(신혼·신생아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혼부부”를 “신혼·신생아”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을“(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혼부부”를 “신혼·신생아”로,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전단 중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을”을 “주택을”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을“(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으

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단서 중 “재계약”을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회”를 “4회”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를 “신혼·신생아”로, “다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을 “해당”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를 “신혼·신생아”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

제20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7조의4,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훈령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종전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후 다른 훈령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입주자 선정 기준 (제7조의4 관련)

<p>1.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p> <p>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점</p>
<p>2.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p> <p>가. 3인 이상 : 3점</p> <p>나. 2인 : 2점</p> <p>다. 1인 : 1점</p>
<p>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p> <p>가. 24회 이상 : 3점</p> <p>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p> <p>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p>
<p>4.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p> <p>가. 5년 이상 : 3점</p> <p>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p> <p>다. 3년 미만 : 1점</p>
<p>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p>
<p>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부양하는 사람 : 1점 (단, 제2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p>



<b>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공급신청서</b> ( [ ] 신혼·신생아 I 전세임대 지원자, [ ] 신혼·신생아 II 전세임대 지원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혼인 및 출생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년 월 일
	②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년 월 일
신청순위	[ ] 1순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신생아가구)	[ ] 2순위 (혼인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 ] 3순위 (혼인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 ] 4순위 (혼인가구, 유자녀)
주택 및 자산현황	[ ] 무주택 [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인)
<b>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 등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나. 차상위계층	3점 2점	( )%	( )점
②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④ 신청인의 당해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⑤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신청인 포함)	2점	등록증 교부여부 ( o , x )	( )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1점	부양여부 ( o , x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9. “다자녀 가구”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u>한정한다.</u>)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 <u>한정한다</u>----- -----.</p> <p>10. <u>“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u></p>
<p>제6조의2(<u>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u>) ① ~ ③ (생 략)</p>	<p>제6조의2(<u>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입주자 선정) ① · ② (생 략)</p> <p>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제7조(입주자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1.·2. (생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 ⑥ (생략)

⑦ 시장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1.·2. (현행과 같음)

3. -----  
-----  
-----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제4호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1. -----  
-----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제7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2. ~ 4. (생략)

⑧ ~ ⑩ (생략)

제7조의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주택의 일부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

-----  
-----  
-----  
----- 않는다-----

2. ~ 4.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  
-----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

1. 신혼·신생아 -----  
-----  
-----  
-----  
-----  
-----  
-----  
-----  
-----  
-----

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I --  
-----  
-----  
-----

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본다.

1. (생략)

<신설>

2.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략)

<신설>

③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의2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  
-----  
-----  
-----  
-----  
-----

②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요건-----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신생아 가구

③ -----  
-----  
-----  
-----



하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중 자녀가 있는 사람 (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임신,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제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3. 제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 신생아 가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 제1순위가 아닌 신혼·신생아 입주대상자(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순위는 신혼·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

<신 설>

④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3점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람으로 한다.

4. 제4순위는 제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 한다.

④ -----  
 -----  
 ----- 별표3  
각 항목의 배점-----  
 -----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  
목의 순서에 따라 -----  
 -----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위계층 : 2점

2.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

<삭 제>

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  
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  
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한  
다)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

<삭 제>

축 납입 횟수(입주대상자 명  
의 저축의 인정회차를 기준으  
로 한다)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

<삭 제>

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  
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삭 제>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

2점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  
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  
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을 부양하는 자 : 1점

<신 설>

<삭 제>

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자  
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  
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산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  
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  
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  
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  
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  
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의5(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2. 제2순위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3.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7조의5(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  
-----  
-----  
-----  
-----  
--.

1. 제1순위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신생아 가구(다만, 제3순위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자에 한한다)

3. 제3순위는 제1, 2순위-----  
--.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생략)

<신설>

제8조의2(신혼부부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⑤ (생략)

⑥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의 입주자격 검증은 제7조의4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신혼·신생아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 -----

----- 신혼·신생아 -----

제10조(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주택(제7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은 전세임대 주택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신혼부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4항제4호의 점수를 제외한다.

② (생략)

제10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전국의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단,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쾌적성 및 안전성

-----  
----- 제외한다  
-----  
-----.

제10조의3(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신혼·신생아 ----- 주택-----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 주택을 -----  
-----  
-----  
-----  
-----  
-----  
-----  
-----  
-----  
-----.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 ③ (생략)

제13조(재계약 자격) ①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제3호, 제7조제4항,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 제7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마목,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제7조제3항제3호, 제7조제7항에 따른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계약 자격) ① -----  
-----  
-----.

1. -----  
-----  
-----  
-----  
-----  
-----  
-----  
-----  
-----

가. -----  
-----  
-----  
----- 제7조제7항, 제7조제8항-----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사람

나.·다. (생략)

2.·3.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청년 전세임대주택  
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별표1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1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  
시설 퇴소청소년이 재계약을 체  
결할 때에는 제12조의2, 제13조  
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  
-----  
-----  
-----  
-----  
-----  
-----

나.·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  
-----  
-----  
-----  
-----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  
계약-----.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생략)

2. 재계약 기간과 횟수는 제12조제3항을 따르되,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략)

④ (생략)

제13조의3(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

-----.

1. (현행과 같음)

2. -----  
----- 4회 -----  
-----  
-----  
-----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신혼·신생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

1. -----  
----- 해당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1. 2. (생략)

④ · ⑤ (생략)

제13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재계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단, 제7조의2제2호가목부터

-----  
-----  
-----.

2.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혼 · 신생아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① -----  
-----  
-----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다음 -----  
-----

다목까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입주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신설>

-----  
-----  
---

1. (현행과 같음)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주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

기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20조(특화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역 여건과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일부를 시장 등 및 대학(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

제20조(특화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① -----  
-----  
-----  
-----  
-----  
-----  
-----

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이 참여하는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라 한다) 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③ · ④ (생략)

-----  
-- 말한다-----  
-----  
--.

② -----  
-----  
-----  
-----  
-----  
-----  
-----  
-----  
-----  
-----  
----- 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